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결과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변경(안 제4조제1호)
 - 수당 인상 : 월7만원 → 월10만원
 나.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정비(안 제5조제3항, 제9조)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 상위법 준용 규정 삭제
 - 수당 환수에 관한 상위법 준용 내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8816(2018. 11. 2.)〕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0663(2018. 9. 7.)〕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9. 27. ~ 2018. 10. 17.)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76조에 따라 환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7만원 지급	1. ---------- 10만원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 등 신청) ①·② (생 략)	제5조(수당 등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후단 삭제>
제9조(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환수) ---------- 제76조에 따라 환수한다.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개정 시 연간 1억7천4백만원 정도의 세출 순증가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참전명예수당 지원인원 : 486명(‘18.7월말 기준)

· 개정 전 지원액 : 70,000원×486명×12월 = 408,240천원

· 개정 후 추가 지원액 : 30,000원×486명×12월 = 174,960천원(증174,96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참전수당	174,960	164,160	153,360	142,560	131,760	766,800
	소계(b)	174,960	164.160	153,360	142,560	131,760	766,800
□ 총 비용(a-b)		-174,960	-164,160	-153,360	-142,560	-131,760	-766,800

4. 재원 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74,960	164,160	153,360	142,560	131,760	766,800
민간							
기타							
합계		174,960	164,160	153,360	142,560	131,760	766,800

5. 부대의견

·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6.25참전유공자는 85세정도, 월남전 참전자는 68세 정도로 대부분 고령자라 인근 시군과 비슷한 금액만큼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작성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이 난 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상세내역

구 분	인원	현 지급액 기준		추가 지급액		계 (연간지급액)
2019년	486	70,000	408,240,000	30,000	174,960,000	583,200,000
2020년	456	70,000	383,040,000	30,000	164,160,000	547,200,000
2021년	426	70,000	357,840,000	30,000	153,360,000	511,200,000
2022년	396	70,000	332,640,000	30,000	142,560,000	475,200,000
2023년	366	70,000	307,440,000	30,000	131,760,000	439,200,000
계			1,789,200,000		766,800,000	2,556,000,000

※ 연간 사망인원 30명 정도로 지급인원에서 매년 감 시킴